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정춘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574 발의연월일: 2025. 5. 22.

발 의 자:정춘생·강경숙·황운하

서왕진 · 김선민 · 이해민

김재원 · 용혜인 · 김준형

차규근 · 신장식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·청구 요건·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.

주민소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잔여임기 가 1년 미만인 경우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 제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9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18세 이상의 주민에 대하여 주민소환투표 권을 부여함(안 제3조).

- 나. 주민소환투표 청구 대상자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하고, 청구요건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하면 서, 그 비율을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기 직전에 실시한 임기만료에 따른 동시지방선거의 전국 평균투표율의 100분의 15로 변경함(안 제7조).
- 다.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 중 '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 일부터 1년 미만일 때'를 삭제함(안 제8조).
- 라.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주민소환투표대상자와 이들이 각각 지정한 자는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하여 주민소환투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9조).
- 마. 소환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되며, 전체 소환투표자의 수가 소환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함(안 제22조).
- 바. 「주민투표법」 제10조제4항・제5항・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하여 전자청구인서명부에 전자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같은 법 제12 조제3항을 준용할 때에 해당 주민소환투표청구의 대상인 선출직 지방공직자는 청구인서명부 열람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(안 제27조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

안」(의안번호 제10575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 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 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작성기준일 현재"를 "작성기준일 전 90일부터 작성기준일까지"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"19세"를 각각 "18세"로 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비례대표선거구시·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은 제외하며, 이하"를 "이하"로, "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"을 "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 자 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"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.

이 경우 그 비율은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기 직전에 실시한 임기만 료에 따른 동시지방선거의 전국 평균투표율의 100분의 15로 한다. 제8조제2호를 삭제한다.

제19조 전단 중 "제69조"를 "제68조제1항 및 제3항·제69조"로 하고, 같은 조 후단 중 "주민소환투표대상자"로, "선거""를 "주민소환투표대 상자"로, "그 배우자(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), 선거사무장, 선거연락소장, 선거사무원, 후보 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"는 "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각각 지정한 자(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시·도지사인 경우에는 5명 이내, 시장·군수·자치구의 구청장인 경우에는 3명 이내, 지방의회의원인 경우에는 2명 이내로 지정한다)"로, "선거""로, "지방공직자"로, "소속정당의"를 "지방공직자"로, "후보자의 사진·성명·기호 및 소속 정당명,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"과 "소속정당의"로 한다.

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"3분의 1"을 각각 "4분의 1"로 한다.

제27조제1항 전단 중 "제10조제1항 및 제2항"을 "제10조(제3항 및 제6항을 제외한다)"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"으로, 같은 법"을 "으로, 같은 법 제12조제3항 중 "주민"은 "주민(해당 주민소환투표청구의 대상인 선출직 지방공직자는 제외한다)"으로, 같은 법"으로 한다.

제3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「공직선거법」 제68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소품등을 사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한 사람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적용례) 제3조, 제7조, 제19조 및 제27조의
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

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주민소환투표권) ① 제4조	제3조(주민소환투표권) ①
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	
투표인명부 <u>작성기준일 현재</u>	<u>작성기준일 전 90일</u>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	<u>부터 작성기준일까지</u>
당하는 자는 주민소환투표권이	
있다.	
1. <u>19세</u>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	1. <u>18세</u>
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	
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	
(「공직선거법」 제18조의 규	
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	
자를 제외한다)	
2. <u>19세</u> 이상의 외국인으로서	2. <u>18세</u>
「출입국관리법」 제10조의	
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	
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	
중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	
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	
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	
재된 자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7조(주민소환투표의 청구) ①	제7조(주민소환투표의 청구) ①
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	

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록 된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하는 자(이하 "주민소 환투표청구권자"라 한다)는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 의회의원(비례대표선거구시・ 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거구 자치구・시・군의회의원은 제 외하며, 이하 "선출직 지방공직 자"라 한다)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의 서명으 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 적으로 명시하여 관할선거관리 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 를 청구할 수 있다. <후단 신 설>

- 1.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: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 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 의 10 이상
- 2. 시장·군수·자치구의 구청 <삭 제> 장 :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

<u>০] ठॅ</u> }
<u>해당 지방</u>
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
권자 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에
해당하는
<u>이 경우 그 비율은</u>
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기 직전
에 실시한 임기만료에 따른 동
시지방선거의 전국 평균투표율
의 100분의 15로 한다.
<u><</u> 삭 제>

<u>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</u> 00분의 15 이상

3. 지역선거구시·도의회의원
(이하 "지역구시·도의원"이
라 한다) 및 지역선거구자치
구·시·군의회의원(이하 "지
역구자치구·시·군의원"이라
한다): 당해 지방의회의원의
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청
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 이
상

② ~ ⑤ (생 략)

제8조(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 기간)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.

- 1. (생략)
- 2.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

 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
- 3. (생략)

제19조(주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) 주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은 해 당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선거 에 관한 규정에 한하여 「공직 <u><삭 제></u>

(2)	\sim	(5)	(현	행과	같	음)
102	(ス	ל וח	८ お.	巨豆	റി	ラ

- 1. (현행과 같음) <삭 제>
- 3. (현행과 같음)

제19조(주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)

선거법 제61조 · 제63조(선거 운동기구에 관한 사항에 한한 다) · 제69조 · 제79조 · 제82조 (제1항 단서를 제외한다) · 제82 조의4 및 제82조의6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선거운동기 간"은 "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" 으로, "후보자"는 "소환청구인 대표자 및 주민소환투표대상 <u>자"로, "선거"</u>는 "주민소환투 표"로, "정당추천후보자"는 "선 출직 지방공직자"로, "소속정당 의 정강·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 항"과 "음악(당가 등 정당이나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 악을 포함한다)" 및 "소속정당 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경력·정견·활동상황"은 각각 "주민소환투표운동에 필요한 사항"으로 본다.

제68조제1항 및 제3항ㆍ제69조 -----주민소환투표대상 자"로, "그 배우자(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 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), 선거사무장, 선거연락소장, 선 거사무원, 후보자와 함께 다니 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" 는 "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주민 소환투표대상자가 각각 지정한 자(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시ㆍ 도지사인 경우에는 5명 이내, 시장・군수・자치구의 구청장 인 경우에는 3명 이내, 지방의 회의원인 경우에는 2명 이내로 지정한다)"로, "선거"--------지방공직자"로, "후보자의 사진ㆍ성명ㆍ기호 및 소속 정 당명,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제22조(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)
①주민소환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권자(이하 "주민소환투표권자"라 한다) 총 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.

②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<u>3분</u> <u>의 1</u>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 를 하지 아니한다.

③ (생략)

제27조(「주민투표법」의 준용 등) ①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하여 이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「주민투표법」 제3조제2항, 제4조, 제10조제1항 및 제2항, 제12조(제8항을 제외한다), 제18조, 제19조, 제23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경우 "주민투표관리기관"은 "주민소환투표관리기관"으로, "지방자치단체의 장"은 "관할선거관리위원회"로, "주민투표"로, "주민토프로"로, "주민토프

<u> 사항"과 "소족성당의</u> .
제22조(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)
①
<u>4분의 1</u>
·.
2
4분
<u>의 1</u>
③ (현행과 같음)
제27조(「주민투표법」의 준용
등) ①
2.0/ 20.722
<u>제10조(제3항 및</u>
<u>제b앙을 제외한나)</u>

표사무"는 "주민소환투표사무" 로, "주민투표청구권자"는 "주 민소환투표청구권자"로. "주민 투표청구인대표자" 및 "청구인 대표자"는 각각 "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자"로, "주민투표청 구"는 "주민소환투표청구"로. "주민투표청구서"는 "주민소환 투표청구서"로, "청구인대표자 증명서"는 "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"로, "주민투표안"은 "주 민소환투표안"으로, "지방자치 단체의 조례"및"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"는 각각 "대통 령령"으로 보고, 같은 법 제10 조제1항 중 "제9조제2항"은 "제7조"로, 같은 법 제12조제1 항 중 "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"는 "시·도지사"로, "자치구 ·시 또는 군"은 "시장·군수 · 자치구의 구청장, 지역구시 · 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・시・ 군의원"으로, 같은 법 제26조제 3항 중 "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 여"는 "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"

으로, 같은 법 제12조제
3항 중 "주민"은 "주민(해당 주
민소환투표청구의 대상인 선출
직 지방공직자는 제외한다)"으

으로 본다.

② (생 략)

제33조(벌칙) 이 법에서 준용하는 「공직선거법」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(생략)

<u><신 설></u>

2. ~ 4. (생략)

로, 같은 법
② (현행과 같음)
제33조(벌칙)
·.
1. (현행과 같음)
2. 「공직선거법」 제68조제1항
및 제3항을 위반하여 소품등
을 사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
을 한 사람
<u>3.</u> ~ <u>5.</u> (현행 제2호부터 제4

호까지와 같음)